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8월 28일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나.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군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바둑 실태조사 사업, 바둑 교육 사업 등 추진사업 규정(안 제4조)
- 마.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연수원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6조)
- 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비롯해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바둑 교육 사업,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등 추진사업

안 제5조 6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연수원 조성과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에서는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상위법률 「바둑진흥법」에서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을 지자체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은 바둑 교육 사업, 바둑 생활체육 관련사업 등 “추진사업”을
중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2개 지자체에서 바둑지원 조례가 제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조례안 제정으로

바둑의 효용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확대의 계기라 보며,
상위법 위반 등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바둑 진흥법」, 「바둑 진흥법 시행령」